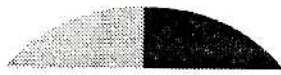


< 검토 >

- 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UN권고안과 같이 위원회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거나 운영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임
- 그런데, 우리 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줄 수 없음
- 또한, 위원회의 자치적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금은 약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의 국가 경제난으로 위와 같은 거금을 정부에서 출연하기 곤란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기부금을 합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임
- 인권위원회의 예산을 법무부에서 예산당국에 요구하도록 한 이유는, 법무부가 인권옹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옹호주무부처이고 예산회계법상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의 예산은 관련 정부부처의 예산에 포함하여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제25조제3항), 법무부가 인권위의 전체예산(국가예산과 민간기부금등 포함)을 편성하려는 것은 아님

< 참고사항 >

인도, 인도네시아, 南阿共,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인권위원회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없고 정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필리핀의 인권위원회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음



# 人權法(案)

1998. 11 法務部

## 목 차

### 第1章 總 則

- 第1條 【目的】
- 第2條 【基本方針】
- 第3條 【定義】
- 第4條 【國家機關의 義務】
- 第5條 【法務部의 役割】
- 第6條 【外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女性特別委員會 등의 役割】
- 第7條 【國民의 義務】

### 第2章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 第8條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 第9條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의 禁止】
- 第10條 【差別行爲】
- 第11條 【人種侮辱】
- 第12條 【性戲弄】
- 第13條 【差別行爲의 禁止】

### 第3章 國民人權委員會

#### 第1節 設立 및 業務

- 第14條 【設立】
- 第15條 【地位】
- 第16條 【事務所】
- 第17條 【定款】
- 第18條 【登記】
- 第19條 【業務】

##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를 防止·救濟하고 人權을 최대한 伸張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方針】 ① 이 法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實踐함을 基本方針으로 하며, 國家는 이 基本方針을 수행하는 第1次的인 책임을 진다.

1. 人權意識 鼓吹를 위한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改善
3. 人權侵害에 대한 迅速한 調査와 救濟
4. 其他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필요한 措置

② 國民人權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의 수행에 관하여 國家의 活動을 監視하고 그 活動이 充分하지 아니할 경우 그 基本方針을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人權”이라 함은 憲法 및 法律에서 보장하거나 大韓民國이 加入·批准한 國際人權條約 및 國際慣習法에서 인정하는 人間으로서의 自由와 權利를 말한다.
2. “矯正機關等”이라 함은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保護監護所, 治療監護所, 少年院, 少年分類 審査院을 말한다.
3. “多數人保護施設”이라 함은 多數人을 保護·收容하는 시설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시설을 말한다.
4. “拘禁·保護施設”이라 함은 警察署 留置場, 矯正機關等, 外國人保護所, 軍矯導所(軍拘置所 및 憲兵隊의 營倉을 포함한다), 多數人保護施設을 말한다.
5. “中央國家機關의 長”이라 함은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 憲法 또는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中央行政機關 또는 合議制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第4條【國家機關의 義務】 ① 國家機關은 第2條第1項의 基本方針에 따라 人權教育 및 弘報,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개선, 人權侵害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의 調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機關은 法令·政策의 집행과정에서 人權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法務部の 役割】 法務部長官은 第4條의 國家機關의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擁護에 관한 綜合計劃의 樹立 및 施行

2. 人權擁護에 관한 各 部處間的 協力
3. 國民人權委員會에 대한 支援
4.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활동하는 團體 및 個人과의 協力

第6條【外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女性特別委員會 등의 役割】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國際人權條約의 加入,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活動의 參加, 在外國民의 人權侵害의 豫防과 救濟를 통하여 人權의 擁護 및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教育部長官은 各級 學校의 教育課程에 人權에 관한 教育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女性, 障礙人, 高齡者, 兒童 등 社會的 弱者의 福祉增進을 통한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多數人保護施設에서 人權侵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④ 勞動部長官은 雇傭의 促進과 勤勞條件의 向上을 통한 勤勞者의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雇傭分野에서 差別行爲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⑤ 女性特別委員會 委員長은 女性에 대한 差別行爲를 豫防·是正·改善하는 활동을 통하여 女性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其他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에 관하여 第2條第1項의 基本方針을 수행하기 위한 方案을 講究하고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7條【國民의 義務】 모든 國民은 人權의 意味와 重要性을 인식하고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第2章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第8條【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는 檢察, 警察, 國家安全企劃部, 矯正機關等, 保護觀察所, 出入國管理事務所(外國人保護所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에서 規정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하는 者, 軍檢察·憲兵·機務部隊에 소속된 軍人 및 軍務員, 위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職務를 行하는 者, 軍인 및 軍무원으로부터 使喚를 받은 자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에 소속된 職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行爲
2.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行爲
3.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押收 또는 搜索하는 行爲
4.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郵便物의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 祕密을 침해하는 行爲
5.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撮影하여 公開하거나 그 祕密을 漏泄하는 行爲
6.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拘禁·保護施設의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懲戒 또는 懲罰하는 行爲

7. 사람에 대하여 暴行, 脅迫, 拷問 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8. 사람을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행위

第9條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의 禁止】 第8條에 規定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하는 者, 軍人, 軍務員, 그 使喚을 받은 자 및 職員은 第8條 各號에서 規定한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 【差別行爲】 “人權侵害行爲 중 差別行爲(이하 “差別行爲”라 한다)”는 合理的인 理由없이 性別(出產 또는 妊娠을 포함함), 宗教, 年齡, 障礙, 社會的 身分, 出身學校, 出身地域, 出身國家, 出身民族, 容貌 등 身體的 條件,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政治的 見解, 人種 또는 皮膚色에 기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憲法 第11條第1項에 規定한 平等權을 侵害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特定한 사람(特定한 사람들의 集團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에 대한 優待를 差別行爲의 範圍에서 제외

한 경우 그 優待는 이 法에서도 差別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雇傭(募集, 採用, 教育, 配置, 昇進, 賃金 및 賃金外의 金品 支給, 資金의 融資, 停年, 退職, 解雇 등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행위
2.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利用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행위
3.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利用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행위
4. 其他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행위

第11條 【人種侮辱】 第10條第1號 乃至 第3號의 規定에 의한 雇傭,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利用 또는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利用에 있어서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을 이유로 特定한 사람에 대하여 敵對感 또는 憎惡心을 表明하거나 輕蔑 또는 嘲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侮辱感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에 基한 差別行爲로 본다.

第12條 【性戲弄】 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인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者에게 性과 관련된 言動을 하여 그로 하여금 性的 屈辱感 또는 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性別에 기한 差別行爲로 본다.

第13條 【差別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差別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章 國民人權委員會

#### 第1節 設立 및 業務

第14條【設立】 ① 搜查機關등에 의한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등을 調査·救濟하고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効果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 委員會는 特殊法人으로 한다

第15條【地位】 ① 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② 委員會는 人事 등 組織 運營에 필요한 事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③ 委員會는 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內部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6條【事務所】 ① 委員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第17條【定款】 ① 委員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4.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5.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小委員會에 관한 사항
7. 事務所에 관한 사항
8. 人權委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0. 內部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委員會는 在籍 人權委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 定款을 變更할 수 있다.

第18條【登記】 ①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9條【業務】 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人權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提案된 法令案을 포함한다)·制度·政策·慣行의 研究와 그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3.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등에 대한 調査와 救濟
4. 國際人權條約에 따른 政府報告書 작성 支援
5. 國際人權條約의 加入 및 履行에 관한 研究와 勸告 또는 意見表明
6. 國家機關이 요청하는 人權에 관한 研究와 諮問
7. 拘禁·保護施設에 대한 視察과 그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8. 人權狀況에 관한 實態調査
9. 人權侵害의 類型, 判斷基準 및 그 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提示 및 勸告
10.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활동하는 團體 및 個人과의 協力
11.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 및 外國의 人權機構와의 交流·協力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業務

第20條【拘禁·保護施設의 視察】 ① 委員會는 人權實態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人權委員으로 하여금 第19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職員 및 專門家를 同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面談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1條【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調要請】 ① 委員會는 第19條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協助하여야 한다.

第22條【勸告 등의 相對方 및 勸告에 대한 尊重義務】 ① 委員會는 第19條第2號, 第5號, 第7號,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을 關係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에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 등의 長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23條【年例報告書 등의 提出】 ① 委員會는 每年 2月 末까지 委員會의 前年度 活動狀況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大統領과 國會에 提出하고 이를 國民에게 公表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大統領과 國會에 特別報告書를 提出할 수 있다

## 第2節 組織 및 運營

第24條【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 以內의 人權委員(以下 "委員"이라 한다)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과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1. 社會的 信望이 높고 人權에 관한 識見과 經驗이 있는 者로 主要 社會團體로부터 推薦을 받은 者
2. 判事·檢事·軍法務官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 以上 있던 者
3. 大學이나 公認된 研究機關에서 副教授 이상 또는 이에 相當한 職에 15年 以上 있던 者
4. 2級 以上 公務員의 職에 5年 以上 있던 者
5. 人權委員會의 職員으로서 20年 以上 근무한 者

③ 委員長은 常任으로 하고, 委員長이 아닌 委員중 3人을 常任으로 한다.

④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을 任命함에 있어 法曹界, 女性界, 勞動界, 市民團體 등 社會의 各 分野를 代表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중 3人 以上을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 任命하여야 한다.

⑥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중 2人 以上을 女性으로 任命하여야 한다.

⑦ 任期가 滿了된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第25條【小委員會】 ①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는 小委員會로 하여금 審議·議決하게 할 수 있다.

1. 定款의 變更, 豫算 및 決算, 內部規則의 制定 및 改廢, 財産의 取得 및 變更 등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사항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拘禁·保護施設의 視察, 第39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 第41條第1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議決,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등의 公開에 관한 사항
3. 委員會의 종전 議決例를 變更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小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委員會가 委員會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5. 기타 委員會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은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것으로 다.

第26條【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名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7條【委員의 任期】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



第28條【委員의 待遇】 ① 委員長은 行政各部의 長官과 동일한 禮遇와 報酬를 받는다.  
② 常任委員은 行政各部의 次官과 동일한 禮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29條【委員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委員長 및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公務員(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4. 政黨의 黨員
  5.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
- ② 委員長 또는 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第30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長 또는 委員은 身體上 또는 精神上의 障擱로 職務遂行이 顯著히 困難하게 되거나 不可能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31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 委員會의 議事は 委員長이 主宰하며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小委員會의 議事は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2條【除斥, 忌避, 回避】 ①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였던 자가 當該 陳情의 當事者(陳情人, 被陳情人 및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의 被害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이거나 그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경우
2. 委員이 當該 陳情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한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委員長은 이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委員長이 결정하기에 相當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 결정한다.

③ 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事由 또는 第2項의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33條【事務處의 設置】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포함한 필요한 職員을 두며 事務總長을 제외한 職員은 委員長이 任命한다.

③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 ④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⑤ 事務總長은 行政各部의 次官과 동일한 禮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34條【資格詐稱의 禁止 等】 ① 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업무처리중 知得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5條【類似名稱使用의 禁止】 委員會가 아닌 者는 國民人權委員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6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3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②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國家公務員法 第65條, 第84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37條【代理人의 選任】 委員長은 委員과 職員중에서 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8條【委員會의 組織·運營등】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委員會의 組織·運營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節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등의 調査와 救濟

第39條【委員會의 調査對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行爲(이하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라 한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1. 第8條에 規定한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2. 第8條에 規定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하는 者, 軍人 및 軍務員을 제외한 다른 國家機關 소속 公務員 또는 그의 使囑를 받은 者가 행한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서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在籍 委員 3分之 2 이상의 贊成으로 調査하기로 議決한 行爲
3. 第10條 내지 第12條에 規定한 差別行爲

第40條【陳情人의 適格】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被害를 입은 者나 그러한 行爲에 관하여 알고 있는 者는 委員會에 陳情할 수 있다.

第41條【陳情의 方式】 ①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陳

情하여야 한다. 다만 文書에 의할 수 없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口述로 陳情할 수 있다.

1. 陳情人의 姓名과 住所
  2. 被陳情人의 姓名 기타 被陳情人을 特定할 수 있는 사항
  3. 陳情의 趣旨와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
- ② 拘禁·保護施設에 收容 또는 保護되어 있는 者가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때에는 拘禁·保護施設의 公務員 및 職員은 그 陳情書 작성을 許容하여야 한다.
- ③ 第2項의 公務員과 職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陳情書を 委員會에 지체없이 送付하여야 하며 그 接受證明書を 委員會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42條【陳情의 却下】 ① 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한다.

1. 當該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經過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陳情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陳情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明白히 虛偽이거나 理由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匿名으로 陳情을 제기한 경우
5. 被害者가 아닌 者의 陳情에 관하여 被害者가 調査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陳情人이 陳情을 取下한 경우. 다만,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이 取下되더라도 被害者가 그 陳情取下에 同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陳情의 趣旨가 當該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에 관한 法院의 確定判決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反하는 경우
8.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과 同一한 事案에 관하여 搜查, 裁判, 行政審判, 國會의 國政監査나 國政調査, 憲法裁判所의 審判이나 憲法訴願, 監査院의 監査,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苦衷民願 調査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機關에서 權利救濟節次가 進行중인 경우
9. 기타 委員會가 調査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明白히 인정되는 경우

② 委員會는 第1項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을 關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陳情을 移送받은 機關은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處理結果를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調査를 개시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한 경우 그 陳情人은 그 却下事由가 消滅한 때에는 委員會에 다시 陳情할 수 있다

第43條【調査의 開始】 ① 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때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그 內容에 관하여 必要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다고 믿을만한 相當한 根據가 있고, 그 내용이 重大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44條【調査의 目的】 ① 委員會의 調査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한 被害救濟를 目的으로 하여야 하며 國家機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個人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查중인 事件의 訴追에 不當하게 干渉할 目的으로 調査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5條【調査의 方法】 ① 委員會는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

1.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에 대한 陳述書 提出要求.
2.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의 出席要求 및 陳述 聽取.
3. 鑑定人의 指定 및 鑑定의 依賴
4. 被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의 소속 機關, 團體등에 대하여 關係資料나 物件의 提出要求 또는 제출된 資料나 物件의 領置

② 委員會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이 발생한 場所 기타 필요한 場所에서 關係 資料, 物件, 施設에 대하여 實地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의 陳述를 청취하 게 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實地調査를 받는 機關, 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物件을 領置할 수 있다.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경우 當該 委員이나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 여야 한다.

第46條【調査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 委員會가 第45條第1項第4號, 第2項 및 第4項의 규정에 의하 여 關係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 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査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中央國家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資料, 物件 또는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 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다.

1. 공개하면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등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搜查·裁判·刑執行에 관한 資料나 物件으로서 공개하면 다음 各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進行중인 犯罪搜查 또는 繫屬중인 裁判에 重大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事件關係人의 名譽나 私生活의 祕密 또는 生命·身體의 安全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搜查方法상의 機密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委員會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料, 物件 또는 施設에 대

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47條【陳情의 移送】 ① 委員會는 陳情에 관하여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리함이 相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陳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國家機關은 移送받은 陳情과 관련된 事件의 處理結果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48條【調査의 中止】 委員會는 陳情의 當事者나 參考人의 所在不明 또는 疾病 기타 사유로 調査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調査를 中止할 수 있다.

第49條【臨時救濟措置 勸告】 ① 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후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蓋然性이 있고, 이를 放置할 경우 回復하기 어려운 被害發生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에 대한 決定 이전에 陳情人이나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中止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被陳情人의 당해 職務로부터의 排除

3. 기타 被害者의 人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救濟措置

② 제1항에 의한 勸告를 받은 被陳情人,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50條【合意勸告】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는 과정에서 搜查對象 人權侵害行爲의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第51條【調停節次의 開始】 ① 委員會는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當該 陳情을 調停에 回附할 수 있다.

② 被害者와 被陳情人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 調停節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2條【調停】 ① 調停은 調停節次의 開始 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被害者와 被陳情人이 記名捺印하고 委員會가 이를 確認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委員會는 調停節次의 開始 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合意의 內容이 相當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陳情에 관련된 모든 事情을 參照하여 陳情의 公平한 解決을 위한 決定(이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中止
2. 同一 또는 類似的인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再發防止를 위한 措置
3. 原狀回復, 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④ 委員會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지체없이 이를 送達하여야 한다.

⑤ 被害者 및 被陳情人은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 送達된 날로부터 2週日 以內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第53條【調停의 效力】 ①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과 被害者 및 被陳情人이 第5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② 委員會는 被害者나 被陳情人이 第5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한 경우에는 被害者에게 다른 救濟手段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第54條【法律救助】 ① 委員會는 第5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한 法律救助를 결정할 수 있다.

② 委員會가 第1項에 의한 法律救助를 결정한 경우 大韓法律救助公團기타 機關에 피해자를 위한 法律救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③ 大韓法律救助公團은 제2항에 의하여 法律救助를 요청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法律救助를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의한 法律救助의 節次, 內容 및 方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5條【救濟措置 등의 勸告 및 意見表明】 ① 委員會는 陳情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內容이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第52條第3項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는 救濟措置를 勸告하거나 意見を 表明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陳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改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 國家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改善을 勸告하거나 意見を 表明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被陳情人 또는 機關·施設·團體의 長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56條【陳情의 棄却】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內容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棄却한다.

1. 事實이 아닌 경우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被害回復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別途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57條【告發 및 搜查依賴】 ①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內容이 犯罪行爲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刑事處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다만, 被告發人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各軍 參謀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를 依賴할 수 있다

第58條【意見陳述機會의 附與】 ① 委員會는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의 勸告 및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을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意見を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그 意見を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59條【決定의 通知】 委員會는 第42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中止,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救濟措置 勸告, 第54條第1項에 의한 法律救助 決定, 제55조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60條【調査등의 非公開】 委員會의 陳情에 대한 調査, 調停 및 審議는 非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第61條【勸告등의 公表】 ① 委員會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과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등의 內容을 公表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 및 搜查依賴를 할 경우에는 그 告發 또는 搜查依賴의 대상인 嫌疑事實을 제외하고 當事者, 罪名, 搜查機關名, 告發 또는 搜查依賴 日字만을 公表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등을 公表하는 경우 個人의 私生活의 秘密이 侵害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個人의 姓名을 匿名으로 하는 등 個人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62條【措置結果등의 通報】 ① 委員會로부터 第19條, 第55條第1項, 第2項 및 第57條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告發, 搜查依賴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 檢察總長, 各軍 參謀總長 또는 搜查機關의 長은 勸告,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로부터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은 그 勸告를 받은 때로부터 48時間 이내에 그 措置結果를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로부터 第19條, 제49조제1항,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이 그 措置結果 등을 通報함에 있어 委員會의 勸告를 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理由를 說明하여야 한다.

第63條【法務部長官에 대한 經由 및 通報】 ① 委員會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 및 國會에 年例報告書 또는 特別報告書를 제출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을 經由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變更, 第19條 第2號, 第5號, 第7號 및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와 第6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을 通報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64條【人權狀況分析報告書】 法務部長官은 每年 5月 31日까지 第19條, 제49조제1항, 第55條第1項, 第2項 및 第57條 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告發 또는 搜查依賴와 第6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나 措置計劃 등을 종합하여 人權狀況을 분석하고 그 改善對策을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65條【準用規定】 委員會가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第44條乃至 第55條, 第57條 내지 第59條, 第61條, 第62條, 第63條를 준용한다.

第66條【陳情處理節次등】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陳情處理節次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승으로 정한다.

#### 第4章 國家의 支援 등

第67條【公務員등의 派遣】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 또는 研究團體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협의하여 그 所屬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파견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파견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파견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파견된 者에 대하여 人事·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措置結果나措置計劃을委員會에通報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로부터第4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勸告를 받은關係國家機關·團體의長이나監督機關의長은그勸告를 받은 때로부터48時間 이내에그措置結果를委員會에通報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로부터第19條, 제49조제1항,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勸告를 받은關係國家機關·團體의長이나監督機關의長이 그措置結果 등을通報함에 있어委員會의勸告를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理由를說明하여야 한다.

第63條【法務部長官에 대한經由 및 通報】 ①委員會는 第23條의規定에 의하여大統領 및 國會에 年例報告書 또는 特別報告書를 제출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을經由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7條第2項의規定에 의한定款의變更, 第19條 第2號, 第5號, 第7號 및 第9號의規定에 의한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4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勸告,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와 第6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措置結果 등을通報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通報하여야 한다.

第64條【人權狀況分析報告書】 法務部長官은 每年 5月 31日까지 第19條, 제49조제1항, 第55條第1項, 第2項 및 第57條 第1項, 第2項의規定에 의한勸告, 告發 또는 搜查依賴와 第62條 第1項의規定에 의한措置結果나措置計劃 등을 종합하여人權狀況을 분석하고 그改善對策을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65條【準用規定】 委員會가 第43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第44條乃至 第55條, 第57條 내지 第59條, 第61條, 第62條, 第63條를 준용한다.

第66條【陳情處理節次등】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陳情處理節次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4章 國家의 支援 등

第67條【公務員등의 派遣】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을經由하여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 또는 研究團體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規定에 의한 公務員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機關 또는 團體의長은 委員會와 협의하여 그 所屬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파견할 수 있다.

③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파견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파견한 機關 또는 團體의長은 委員會에 파견된 者에 대하여 人事·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8條【出捐金の交付】 ① 國家는 委員會의 設立, 施設, 運營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에 出捐金を 交付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每年 出捐金豫算要求書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捐金豫算要求書를 調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산당국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の 要求, 交付, 使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9條【財産의 寄附】 ① 法人·團體 및 個人은 委員會의 施設 및 運營에 관한 支援을 위하여 委員會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부받은 財産은 委員會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 第5章 罰則

第70條【罰則】 ①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한 虛偽의 事實을 委員會에 陳情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以下の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③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71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0萬원 以下の 過怠料에 處한다.

1. 正當한 이유없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正當한 이유없이 第4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한 者

3. 正當한 이유없이 第45條第1項第4號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資料나 物件을 提出한 者

4. 正當한 이유없이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第3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00萬원 以下の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委員會의 요청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法務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法務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 法務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 以內에 7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委員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은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委員會에 그 事務를 引繼한다.

⑤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 委員會가 設立될 때까지 委員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委員會가 이를 부담한다.

第3條【人權委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① 第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설립당시 委員(委員長은 제외한다)중 常任委員 1人과 非常任委員 3人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가 2年인 委員에 대하여는 任命狀에 그 任期를 明示하여야 한다.

# 『人權法(案)』의 主要內容

1999. 2. 9

法 務 部

# 目 次

I. 人權法 制定 推進經過 .....	1
----------------------	---

II. 人權法(案)의 主要骨子 .....	3
------------------------	---

1. 概要 .....	3
-------------	---

2. 人權侵害行爲 중 差別行爲에 대한 금지 규정 .....	5
----------------------------------	---

3. 國民人權委員會 .....	6
------------------	---

## I. 人權法 制定 推進經過

- '98. 4. 9 大統領께 업무보고시 “人權委員會” 설립 계획 보고
- 5. 21 KNCC 주최 “국가인권위” 세미나 참석
- 6. 23 韓國人權團體協議會 주최 “국가인권기구” 토론회 참석
- 9. 9 亞·太지역 국내인권기구 포럼(자카르타) 참가
- 9. 18 市民團體 대표등과 인권법 토의
- 9. 21 大統領께 人權法試案 報告
- 9. 22 관계부처 意見照會
- 9. 24 黨政協議(1차)
- 9. 25 人權法(試案) 說明會 및 人權法(試案) 發表
- 10. 1 立法豫告
- 10. 2 政策企劃委員會 주관 국민인권위 기획팀 회의 참가(11.14까지 5차례)
- 10. 12 大韓辯協 임원들과 인권법 간담회
- 10. 14 黨政協議(2차)

○ '98. 10. 16 UN인권고등판무관 특별보좌관과 인권위  
설치방향 논의

○ 10. 16 人權法 制定 公聽會

○ 10. 17 KBS - TV 심야토론 참가

○ 10. 26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인권법 토론회  
참석

○ 11. 6 공추위 주최 인권법 공청회 참가

○ 11. 7 長官 주최 각계 초청 토론회(1차)

○ 11. 16 한겨레신문 인권법 대담

○ 11. 16 長官 주최 각계 초청 토론회(2차)

○ 11. 17 CBS 라디오 인권법 대담

○ 11. 28 人權法 수정안 작성, 黨政協議(3차)

○ 12. 8 국회 인권포럼 주최 인권위 설치방향  
공청회 참가

○ 12. 9 黨政協議(4차, 청와대)

○ '99. 1. UN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인권연맹등의  
자문

○ 2. 9 黨政協議(5차)

## II. 人權法(案)의 主要 骨子

### 1. 概 要

#### □ 目的과 基本方針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人權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人權侵害를 防止·救濟하고 人權意識을 擴散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① 人權意識 고취를 위한 敎育과 弘報
  - ② 人權의 保護와 伸張을 위한 制度改善
  - ③ 人權侵害行爲의 調査와 救濟등의 실천을 基本方針으로 함

#### □ 政府의 역할을 규정(안 제5조~제6조)

- 법 무 부 : 정부의 인권옹호종합계획의 수립과 홍보, 각 부처간 협력, 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
- 외교통상부 :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통한 인권신장
- 교 육 부 :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 노동부 : 근로자의 인권신장과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 방지·구제

○ 여성특위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예방·시정·개선

#### □ 人權委員會의 역할을 규정(안 제2조 제2항)

○ 기본방침의 수행에 대하여 國家가 제1차적 責任을,  
人權委員會가 이를 監視·補完하는 責任을 부담함

○ 國家의 司法制度인 독립된 사법부(法院)와 국가소추  
및 수사기관인 檢察, 수사기관인 警察이 그 고유기능  
에 따라 구체적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나, 그  
虛點이 있으므로 人權委가 이를 監視, 救濟, 補完함

○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의 인권보장 기능·역할을  
監視, 救濟, 補完함

○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와 「여성  
특위」의 관할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권위가 독자적  
으로 광범위하게 관여함(차별행위중 범죄행위와 「여성  
특위」 관할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인권위가 보충적으로 관여)

## 2. 人權侵害行爲 중 差別行爲에 대한 금지 규정

### □ 人權侵害行爲와 差別行爲(안 제8조~제13조)

- 한국에서는 타인의 인권(권리)을 침해하는 행위는 대체로 형법과 기타 특별형사법에 '犯罪行爲'로 규정되어 처벌규정이 있음
- 그러나, 差別行爲에 대하여는 구체적 개별 법률에 의한 금지규정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권법에서 차별행위 전반에 대한 定義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금지·구제 규정을 새로이 설정함

### □ 人權法에서 금지되는 差別行爲(안 제10조~제13조)

- 定義 : 性別, 人種, 宗教, 政治的 見解, 心身의 障礙, 出身地域 등을 이유로 雇傭, 財貨·서비스의 제공, 公衆施設 등의 이용 기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合理的인 根據없이 특정한 사람들을 우대하거나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 憲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平等權을 침해하는 행위(안 제10조)
- 「人種侮辱」과 「性戲弄」을 差別行爲의 특수한 유형으로 규정(안 제11조, 제12조)

### 3. 國民人權委員會

#### □ 設立形態 및 地位

- 人權保障의 國內 실천기구로서 『國民人權委員會』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特殊法人 형태로 설립함
- 政府로부터의 獨立的 地位를 制度的으로 보장함
  - ※ 「국민인권위원회」의 獨立性
    -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독립법인」 형태
    - 그러나, 주무부처로부터 인사, 예산, 업무처리에서의 獨立性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人權委를 ‘國家機關(정부기구)’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獨立 特殊法人’으로 설치하는 이유

- ① 國家機關으로 할 경우, 權力型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는데 限界가 있음
  - 대통령 산하의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위는 그 성격상 執權層의 權力型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기 어려움
  - ※ 한국에서 문제되는 인권침해는 주로 집권층에 의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權力型 인권침해임(군사정권이 저지른 「疑問死 사건」등)

- 현 대통령은 세계적 인권지도자이고 그 자신이 군사

정부의 인권침해의 희생자로서 한국 새정부의 권력층이 인권침해를 할 리는 없으나, 人權委는 현 대통령 임기 이후에까지 존속해야 하므로 항구적 제도로 설치해야 함

※ 이 점에 관하여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을 신뢰하여 우리의 권리보장에 대한 염려를 침묵케 하는 것은 위험한妄想이다. 민주정부는 信賴(confidence)가 아니라 猜忌(jalousy)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민주국가에서의 立法의 原理를 말한바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모든 대통령이 반드시 인권의식이 투철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 ② 國家機關들 간의 機能重複 방지

-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할 경우 「감사원」, 「여성특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등 기존 국가기관과 機能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고, 정부기구간 갈등 야기로 인하여 정부기능의 弱化·혼란 초래
- 중복되는 기능을 제외한 축소된 인권위를 만들 경우는 진정한 人權委員會가 될 수 없음
- 그러나, 정부밖에 설치된 독립법인 형태의 人權委는 정부기구가 아니므로 全 정부기관의 모든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自由롭게 감시·구제할 수 있음

※ 최근 「여성특위」의 조사·시정권고권 부여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행위는 국가기관인 「여성특위」에서 조사, 구제할 수 있게 되었음.  
人權委를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고 남녀차별을 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 이는 결국 기능이 축소된 「남성인권위」에 불과하게 되고, 남녀차별분야를 다루게 되면 「여성특위」와 기능이 완전히 중복되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됨

※ UN권고안도 “새로운 국내인권기구는 기존의 기관들과 경합(competete)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충(complement)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어야 한다”(UN권고안 문단 91)고 하고 있음

③ 민간 人權指導者의 참여·교류 용이

-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 國家公務員法의 적용이 배제되고, 人權委가 독자적으로 자체 직원선발·임용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인권지도자등 유능한 인권전문가의 참여·교류가 용이함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상 공무원은 大統領이, 6급이하 공무원은 소속長官이 임용권을 행사함 ; 동법 제32조)
- UN권고안도 “직원 개개인의 능력, 대표성 및 공정성은 국내인권기구의 대외적 이미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人權委에게 자체 직원을 모집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권고함(UN권고안 문단 126)

#### ④ 현정부의 「작은 政府」 구현 이념에 부합

-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신분이 민간인 이어서 공무원 증원을 필요 없음
- 그러나, 국가기관으로 하면 방대한 규모의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구조개혁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됨 (장관급등 고위직 포함 최소한 100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 필요)

#### ⑤ 민간부문과의 親和力과 일반 국민의 接近可能性 확보에 유리

- 人權委는 다른 기구와의 협력, 그중에서도 비정부기구(NGO)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이 그 기능 수행에 대단히 중요한데(UN권고안 문단108),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민간 차원의 독립법인 형태로 하는 것이 NGO등 민간부문과의 연대 및 친화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유리함
-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은 관료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종종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UN 권고안 문단 109), 일반 국민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가기관보다는 민간차원의 독립법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⑥ 독자적 財産保有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등과는 별개의 法人格 부여로 국가조직에서 分離·獨立된 법적 주체성 인정
- 人權委 자신의 명의로 不動産 등 재산을 所有 또는 임대하거나 소송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률행위를 명확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음 (비법인사단·재단등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운 법률관계나 법적 분쟁을 예방)
- 후원회, 바자회와 같은 行事로 거액의 寄附金을 유치하는 등 외부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음 (국가기관 일 경우는 곤란)

⑦ 독립 특수법인 형태가 UN 권고안 및 外國의 경험상 보다 효율적임이 입증됨

- UN 권고안은 “인권위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independence from government)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위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정도의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인격 (separate and distinct legal personality)을 부여받는 것이 이상적이다”(UN 권고안 문단 70)라고 권고하며, “인권위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인권존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UN 권고안 문단 299)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정부기구)보다는 정부 밖의 독립 특수법인 형태가 UN 권고안에 부합

- UN으로부터 모범적인 人權委라고 평가받고 있고, 각국의 인권위 설립시 모델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의 인권위는 모두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임
- 최근에 설립된 南아프리카共和國(1995년), 스리랑카(1997년)의 인권위도 독립적 특수법인 형태임

⑧ 위원회 활동의 實效성이 保障되어 있음

- 국가기관일 경우 못지않게 위원회의 활동, 특히 조사 활동의 實效성이 보장되어 있음
- 실효성 보장의 내용

(a) 制裁手段

▲형사처벌 : 委員會業務妨害罪(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방해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救濟申請妨害罪(구금·보호시설에서 위원회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불허시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과태료부과(1,000만원 이하) : 출석요구불응, 자료 제출거부, 허위자료제출, 현장조사거부, 구금·보호시설 시찰거부

※ 일반수사기관의 경우 참고인의 출석불응이나 자료제출거부시 제재수단 없음



(b) 국가기관등의 協力義務

위원회에 대한 誠實協助義務, 위원회 권고에 대한 尊重義務, 그 권고에 대한 30일 이내 조치결과등 통보의무, 권고불수용시 그 이유설명 의무, 긴급구제 조치권고에 대한 48시간내 조치결과등 통보의무

(c) 公表制度

위원회의 권고등 처리내용 공표가능.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人權侵害라는 민감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기관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여론의 비난의 標的이 되기 때문에, 公表制度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이 됨(外國의 경험상 입증)

□ 國民人權委의 業務(안 제19조)

1. 인권 교육 및 홍보
2.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필요한 경우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과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등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권고

7. 민간 인권단체와의 협력

## □ 國民人權委의 組織

○ 人權委員(안 제24조 ~ 제29조)

-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그중 위원장 외 3인의 인권위원은 상임

-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이 각 상임위원 1인과 여성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위원장은 이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 위원장과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체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되는 경우, 그리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외에는 면직되지 아니함

- 임기 : 3년, 1차 연임 가능

○ 小委員會(안 제25조)

- 전체위원회 관장사항중 일부를 상임위원 1인이 포함된 3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小委員會에서 처리(3개 小委 구성)

○ 事務處(안 제32조)

-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

-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위원회 규칙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직, 강임, 면직등 불가 <신설>

○ 地方事務所(안 제16조)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음

**□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와 差別行爲에 대한 調査와 救濟(안 제40조~제67조)**

○ 調査對象(안 제40조)

(1) 수사기관등의 人權侵害行爲

A) 행위주체 : 搜查機關등 從事者(검찰, 경찰, 國情院,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헌병·기무부대 소속 軍人·軍務員)과 그 사주를 받은 자 또는 정신병원등 多數人保護施設 소속 직원

B) 행위유형 : 不法으로,

- 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행위
- ② 사람에게 대하여 暴行, 脅迫, 拷問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③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우편물의 檢閱, 전기통신의 監聽 또는 타인 간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행위
- ⑤ 타인의 私生活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暴露하거나 寫眞을 撮影하여 公開하는 행위
- ⑥ 사람을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유발하는 행위
- ⑦ 警察署留置場, 矯正機關, 多數人保護施設 등의 수용자나 피보호자를 法令上 根據없이 懲罰하는 행위
- ⑧ 타인의 預金計座를 추적하는등 押收·搜索하는 행위

(2) 수사기관등 종사자 이외의 국가기관 공무원 또는 그 사주를 받은 자가 행한 위 (1)항 B)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권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한 행위

(3) 인권침해행위 중 차별행위 일반(안 제10조의 차별 행위)

○ 調査開始事由 : 陳情 또는 職權(안 제41조, 제44조)

○ 調査方法(안 제46조, 제47조)

- 진정인, 관련 국가공무원, 기타 관련자에 대한 出席要求權, 陳述調書作成權, 鑑定依頼權, 관계 증거자료등의 提出要求權 등 인정

○ 處理

- ① 緊急救濟措置의 勸告(안 제50조)
- ② 調停(안 제52조~제54조)
- ③ 法律救助(안 제55조)
- ④ 救濟措置의 勸告 또는 意見表明(안 제56조 제1항)
- ⑤ 告發 및 搜查依賴(안 제58조)
- ⑥ 관계 法令·制度등의 改善勸告 또는 意見表明(안 제56조 제2항)
- ⑦ 관계기관에의 移送 (안 제48조)
- ⑧ 진정의 却下 및 棄却(안 제43조, 제57조)
  - 진정의 원인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각하 대상. 다만, 1년 경과한 경우라도 전체위원회 의결 있으면 조사가능(과거사 청산기능 수행가능)

○ 措置結果 通報(안 제63조, 제64조제2항)

- 고발,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에 대한 措置結果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通報하여야 함(긴급구제 조치권고의 경우는 48시간 내에 조치결과나 조치 계획을 통보해야 함)
-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受容하지 않을 경우 正當한 理由를 說明하여야 함

□ 拘禁·保護施設에 대한 視察(안 제20조)

- 인권실태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경찰서유치장, 교정기관, 외국인보호소, 군교도소 및 다수인보호시설등 拘禁·保護施設에 대하여 인권위원이 視察
- 시찰시 수용자나 피보호자 面談 가능
-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 □ 委員會 活動의 實效性 확보수단

### ○ 刑事處罰(안 제37조, 제71조)

- 委員會業務妨害罪 : 인권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신설>
- 救濟申請妨害罪 : 경찰서유치장, 교도소등 구금·보호시설에서 위원회에 제출할 陳情書 作成을 不許하거나, 작성된 진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설치(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過怠料 부과(안 제72조)

- 아래의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不應한 자
  - 위원회의 자료·물건제출 요구에 不應하거나 虛偽의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 위원회의 現場調査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視察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 國家機關등의 協力義務

- 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성실협조의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존중의무(안 제21조, 제22조)
-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公務員 派遣 가능(안 제68조)

○ 처리내용의公表(안 제62조)에 의한 國民 輿論

다만,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匿名으로 公表

□ 委員會의 豫算(안 제69조)

- 위원회의 예산은 정부 出捐金과 민간기부금으로 충당
- 위원회의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법무부의 조정 불가, 예산청에 의견제시만 가능

□ 委員會의 年例報告書(안 제23조)

- 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大統領 및 國會에 제출하고 國民에게 공표
-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보고서 제출·공표

□ 法務部의 人權狀況 分析報告書(안 제65조)

- 매년 5월중 정부의 인권상황개선 노력과 위원회가 지난 1년간 행한 실적등을 종합, 인권상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대책을 大統領에게 보고

기타 罰則(안 제71조)

- 위원회에 虛僞事實을 陳情한 경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인권위원등의 자격사칭의 경우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인권위원 및 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金品收受(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職權濫用(형법 123조), 秘密漏泄(형법 127조)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
- 인권위원 및 직원이 政治運動에 관여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으로 처벌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人權法(案)

1999. 2. 9

法 務 部

## < 목 차 >

### 第1章 總 則

- 第1條 【目的】
- 第2條 【基本方針】
- 第3條 【定 義】
- 第4條 【國家機關등의 義務】
- 第5條 【法務部の 役割】
- 第6條 【外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女性特別委員會  
등의 役割】
- 第7條 【國民의 義務】

### 第2章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 第8條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 第9條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의 禁止】
- 第10條 【差別行爲】
- 第11條 【人種侮辱】
- 第12條 【性戲弄】
- 第13條 【差別行爲의 禁止】

### 第3章 國民人權委員會

#### 第1節 設立 및 業務

- 第14條 【設立】
- 第15條 【地位】
- 第16條 【事務所】

- 第17條 【定款】
- 第18條 【登記】
- 第19條 【業務】
- 第20條 【拘禁·保護施設の 視察】
- 第21條 【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調要請】
- 第22條 【勸告 등의 相對方 및 勸告에 대한 尊重義務】
- 第23條 【年例報告書 등의 提出】

## 第2節 組織 및 運營

- 第24條 【委員會의 構成】
- 第25條 【小委員會】
- 第26條 【委員長의 職務】
- 第27條 【委員의 任期】
- 第28條 【委員의 缺格事由】
- 第29條 【委員의 身分保障】
- 第30條 【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 第31條 【除斥, 忌避, 回避】
- 第32條 【事務處의 設置】
- 第33條 【懲戒委員會의 設置】
- 第34條 【職員의 身分保障】
- 第35條 【資格詐稱의 禁止 等】
- 第36條 【類似名稱使用의 禁止】
- 第3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第38條 【代理人의 選任】
- 第39條 【委員會의 組織·運營等】

## 第3節 搜查機關 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의 調査와 救濟

- 第40條 【委員會의 調查對象】
- 第41條 【陳情人의 適格】
- 第42條 【陳情의 方式】
- 第43條 【陳情의 却下】
- 第44條 【調查의 開始】
- 第45條 【調查의 目的】
- 第46條 【調查의 方法】
- 第47條 【調查의 限界와 事實照會】
- 第48條 【陳情의 移送】
- 第49條 【調查의 中止】
- 第50條 【緊急救濟措置 勸告】
- 第51條 【合意勸告】
- 第52條 【調停節次의 開始】
- 第53條 【調停】
- 第54條 【調停의 效力】
- 第55條 【法律救助】
- 第56條 【救濟措置등의 勸告 및 意見表明】
- 第57條 【陳情의 棄却】
- 第58條 【告發 및 搜查依賴】
- 第59條 【意見陳述機會의 附與】
- 第60條 【決定의 通知】
- 第61條 【調查등의 非公開】
- 第62條 【勸告등의 公表】
- 第63條 【措置結果등의 通報】
- 第64條 【法務部長官에 대한 經由 및 通報】
- 第65條 【人權狀況分析報告書】
- 第66條 【準用規定】
- 第67條 【陳情調查·處理節次등】

#### 第4章 國家의 支援 등

第68條 【公務員등의 派遣】

第69條 【出捐金の 交付】

第70條 【財産의 寄附】

## 第5章 罰 則

第71條 【罰則】

第72條 【過怠料】

## 附 則

第1條 【施行日】

第2條 【設立準備】